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79

발의연월일: 2021. 7. 28.

발 의 자:이은주·장혜영·배진교

심상정 · 김민철 · 김병주

임종성 · 오영환 · 임오경

강은미 • 류호정 • 김경협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선거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의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이 어렵거나 재외투표소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 등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제안이유

- 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와 투표를 마친 거소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각각 발송·회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제218조의18제6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 나.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이라면 2회 이상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 계속 등재하여 두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3항 후단 삭제).
- 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 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전단 중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를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이하 제218조의18에서 같다"로 한다.

제218조의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소투표 신청 여부와 그 사유(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 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서 같다)

제218조의5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소투표 신청 여부와 그 사유

제218조의8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전단 중 "재외선거인명부에"를 "재외선거인명부(거소투표재외선거 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른 거소투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정당한 신청인 때에 는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표재 외선거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구·시·군의 장은 제218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거소투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정당한 신청인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 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다만, 재외거소투표자(거소투표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국외부 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투표는 선거일 전 9일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도착되어야 한다.

제218조의17제7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투표시간의 연장·단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

라 설치된"으로 한다.

제218조의18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4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⑥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재외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여부,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거나 투표용지가 반송된 재외거소투표자의 명단 작성 및 통지, 투표용지의 발송·회송 방법 및 우편요금 부담과거소투표 안내문 발송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선거일전 2일"은 "선거일"로, "선거일전일"은 "지체 없이"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 본다.

제218조의19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송부받은 재외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지를 즉시 우편 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1제1항 본문 중 "투표함"을 "투표함(제218조의19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우편투표함을 포함한다. 이하 제218조의2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전단 중 "제4항제7호·제10호"를 "제4항제10호"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2호 중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를 "거소투표자(재외거소투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투표를 간섭하거나"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가목 중 "제218조의9제3항"을 "제218조의9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18조의4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부

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외선거인의 거소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18조의5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 도래하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218조의8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으로서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
용지의 발송) ① 거소투표신고	용지의 발송) ①
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	
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	
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	
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	
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	
투표자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	
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이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	<u>하 제218조의18에서 같다</u>
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	
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u>.</u>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	
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제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야 한다.
 - 1. ~ 5. (생 략) <u><신 설></u>

- ③ ~ ⑤ (생 략)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 ① (생 략)
 -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한다.

∥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거소투표 신청 여부와 그 사
유(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
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
거나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
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
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
2항제6호에서 같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1 3 4 E B) (2)

1. ~ 5. (생 략) <u><신 설></u>

③ ~ ⑤ (생 략)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생 략)
<<u>신 설></u>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 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 된 <u>재외선거인명부에</u> 올라 있 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재외</u>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 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

1. ~ 5. (현행과 같음)	
6. 거소투표 신청 여부와 그 시	-
٠ ۴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직	_
성) ① (현행과 같음)	1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	_
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른 거소	-
투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
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정딩	-
한 신청인 때에는 제1항에 띠	_
른 재외선거인명부에 그 사실	_
	_
을 표시하고 거소투표재외선거	
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힌	_
<u>다.</u>	
<u>③</u>	-
	-
	_
	-
	-
재외선거인명부(거소투표자	
외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히	_
같다)에	-
 <후단 삭제>	
· <u> </u>	

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 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 부의 작성) ① (생 략) <신 설>

②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u>국외부재자신</u> 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생 략)④ (현행 제3항과 같음)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법)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 법)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 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시·군의 장은 제218조의4 제2항제6호에 따른 거소투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정당한 신청 인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부재자신고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표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 고인명부(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 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신 설>

- ③ (생략)
-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 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제 ·운영) ① ~ ⑥ (생 략)

다만, 재외거
소투표자(거소투표재외선거인
명부 또는 거소투표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소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
를 할 수 있다 <u>.</u>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투표
는 선거일 전 9일 오후 5시까
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도착되
<u> 어야 한다.</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제4항
∥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
<u>ㅇ</u>)
⑦
천재지변이나 감

을 조정할 수 있다.

(8) · (9) (생 략)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 간의 연장·단축이 필요한 경우 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 (8)·(9) (현행과 같음)
-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거 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 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항 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 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 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4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 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 여야 하다.
 - ⑥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재외거소투표 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여 부,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 하였거나 투표용지가 반송된 재외거소투표자의 명단 작성 및 통지, 투표용지의 발송·회송 방법 및 우편요금 부담과 거소

<u>⑤</u> (생 략)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 차) ① ~ ③ (생 략) <신 설> 투표 안내문 발송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선거일전일"은 "선거일"로, "선거일전일"은 "서거일"로, "선거일전일"은 "지체 없이"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국가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 본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 차) ① ~ ③ (생 략) 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 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 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 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 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이 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이를 송부받은 재외투표관 리관은 해당 투표지를 즉시 우

④ (생 략)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 관인의 참관 아래 <u>투표함을</u>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 일괄하여인계할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u>제4</u> <u>항제7호·제10호</u>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u>한다.</u>	
<u>⑤</u> (현행 제4형	}과 같음)
제218조의21(재외	· 부표의 회송) ①
	<u>투표함(제21</u>
8조의19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우편투표	도함을 포함한다.
	의22에서 같다)
② ~ ④ (현행	· H라 간으)
] 투표의 효력) ①
/\ \210\to\\\\\	11 11 11 11 11
	7i] 4
	<u>제4</u>
<u>항제10호</u>	
•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②·③ (생 략)

-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지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생략)
 - 2. 정당한 사유 없이 <u>거소투표</u>
 <u>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u>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 ②・③ (생 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기
 -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생략)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1. (현행과 같음)
2거소투표
자(재외거소투표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3
1. (현행과 같음)

- 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2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 가. 제39조제8항(제218조의9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者
 나. ~ 아. (생략)
- 3. 4. (생략)
- ④·⑤ (생 략)

2
가 <u>제218조의9</u>
제4항
나. ~ 아.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